

K마크 인증제도

1. K마크 제도의 개요

■ 제정목적

공산품에 대한 품질향상과 제3자 공인시험기관의 신뢰성 확보를 통하여 사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관설립 법률 「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」의 “제품의 규격, 성능시험 및 품질인증”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

■ 인증개요

공인기관으로 공산품에 대하여 해당적용 규격에 의한 시험·검사를 실시하여 적합여부를 평가하고 그 품질이 동일수준이상으로 지속적이고 안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제품에 한하여 「K마크」를 부여하는 인증제도

적용규격은 공인기관으로서 생산자와 함께 소비자가 요구하는 품질수준에 부합하는 규격을 제정 또는 국제규격을 원용함

■ 인증구분

안전, 성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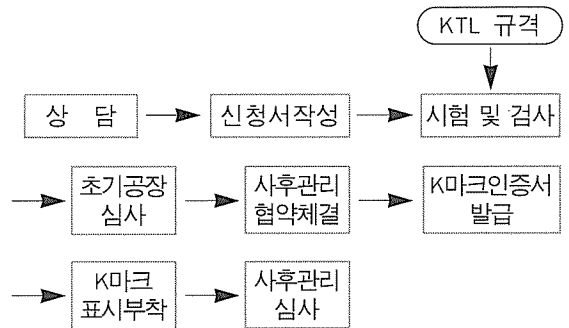
2. K마크 신청 및 절차

■ 신청대상

- ◆ 공작기계·산업기계 및 설비, 부품류
- ◆ 공조기계·시설 및 공압부품류

- ◆ 환경설비,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처리시설 등
- ◆ 측정 및 계측기류
- ◆ 재료 및 구조해석 분야
- ◆ 전기·전자 및 의료기기 분야
- ◆ 일정한 품질인증 기준이 없고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제품 및 부품

■ 인증절차



■ 인증신청 준비물

- ◆ 인증신청서(산기원 양식)
- ◆ 시험품의 기술자료(카다로그, 도면 취급설명서, 주요사양 등)
- ◆ 주요 부품목록(안전, 성능 등에 영향을 주는 부품)
- ◆ 시험품 및 시험품의 사진(시험품의 외관 및 내부사진)
- ◆ 신청기업개요 및 기타 참고자료(인증품목별 시험에 필요한 자료)

3. K마크를 획득하면

- ◆ 국·내외 제조물 책임 배상보험(PL보험)에 가입시 최대 25%까지 보험료 할인혜택
- ◆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단체수의 계약 운용규칙 제12조의

물량배정 기준에 배점 50~60의 혜택

- ◆ ISD 9000/14000, QS 9000, CE마킹 등 주요 외국기관(19개국 30기관)의 품질인증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지원
- ◆ 국방부 조달본부 입찰 및 금융기관의 자금지원 심사시 가점 수혜
- ◆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 구매물자의 우선구매 협조요청
- ◆ 독립홈페이지(<http://www.kmark.org>)에 기업소개(국내외)
- ◆ 정기간행물, 관련 기술정보 등 우선제공
- ◆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업무에 우선지원
- ◆ 산기원의 각종 시험 수수료 감면혜택

※문의 : 산업기술시험원품질인증본부
기계인증팀

- TEL : (02)8601-351, 363
- FAX : (02)8601-355
- 인터넷 : <http://www.ktl.re.kr/cert>
<http://www.kmark.org>

Y2K문제해결을 위한 비상계획 수립

컴퓨터2000년 문제의 해결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현재 산업자원부에서는 최근 설비의 Y2K관련문제 발생시 혼란을 최소화하고 복구시간 및 비용절감을 위하여 산업계에서 쉽게 산업자동화설비에 대한 비상계획을 수립하였으니 업무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.

<산업자동화분야 Y2K 비상계획 수립절차>

1. 비상계획 수립목적

- 가. 설비의 Y2K관련문제 발생시 혼란 최소화
- 나. 복구시간 및 비용 절감

2. 비상계획 수립방법

가. 활동지침

- (1) 비상계획 작성을 위한 조직 구성, 대상선정, 우선순위 결정, 문제발생/대응 시나리오 등을 통하여 비상계획 작성
- (2) 해당 시스템의 설치/관리부서 및 운영부서의 실무자 등이 비상계획 수립(최종 경영자 설치/관리/운영 부서에 수립을 직접 지시)

나. 비상계획 수립 방향

- (1) 시스템에 대한 현황과 예측 가능한 문제발생유형, 문제 발생원인 기술
- (2) 위험과 파급효과 분석
- (3) 문제발생시 기업의 업무 및 기능 수행에 안정적으로 지속시킬 수 있는 비상대응 체계와 방법 제시

3. 비상계획 수립절차

가. 비상계획 착수

- (1) 비상계획 수립을 위한 작업그룹 구성
 - (가) 대책반내에 별도의 작업그룹으로 구성
 - (나) 구성원 : 소관부서의 책임자, 관련업무 실무자, 시스템 운영자, 기타 계약 전문가
 - (다) 수시연락 가능한 체계유지
 - (라) 구성원 자가에 대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의함
- (2) 대상시스템 분류
 - (가) 영향평가 단계에서 선정한 시스템을 대상으로 함
 - (나) 내외부 업무간 연계되는 업무부분 또는 인터페이스 되는 시스템을 분류함

나. 영향성 분석

(1) 시스템위험 및 영향분석

- (가) 기능적, 업무적, 시스템적 처리정보 등에 대한 업무간 종속성 및 관계성 분석
- (나) 시스템에서의 예상 문제발생 유형 및 발생 원인, 발생시기에 대한 파악 등
- (다) 고객, 공급사 등 관련업체에 대한 위험 및 영향 분석
- (라) 시스템 측면의 위험 및 영향도에 대한 분석
- (마) 시스템 인터페이스 부분에 대한 분석 등

(2) 대상우선순위 선정

- (가) 상기의 시스템 위험 및 영향분석을 통하여 선정된 시스템을 대상으로 위험도 및 조직 업무의 주요도 등 조직내부 기준에 따라 선정
- (나)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비/시스템별로 우선순위 결정
- (다) 우선순위 결정이 곤란시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설비/시스템을 선정

(3) 위험업무 선정:설비/시스템별 운영시나리오를 분석하여 위험업무 선정

(4) 문제발생 시나리오 작성

- (가) 선정된 위험업무의 문제 발생시를 대상으로 문제발생이 가능한 가상 시나리오 작성
- (나) 문제의 발생에서부터 예상 가능한 최대한의 파급효과를 순서적으로 상세하게 분석함

다. 비상계획 수립

(1) 문제대응계획 수립

- (가) 대응방안 도출
 - 1) 수동적 대응, 반자동적 대응, 자동대응 등의 대응 방안 결정
 - 2) 부분대응, 전체대응, 외부 위해결, 위탁해결 등 결정
 - 3) 설비 및 자동화장비 등 시스템 요소별로도 문제 발생시 대응방안을 수립

4) 대응을 위한 세부 처리절차 및 소요시간 분석

(나) 최선의 대응방안 수립

- 1) 작성된 문제발생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문제 대응계획을 작성
- 2) 최소한의 기능으로 소요시간 및 비용이 적게 소요되도록 대응방안 수립

(2) Zero-Day 계획수립 : 다음 활동을 참고하여 기업은 자사에 맞는 전략을 개발

(* Zero-Day계획 : 문제발생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2000년 전환시의 기업운영 방침)

- 끝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끄
- 위험한 지역 또는 건물에 사람이 없도록 함
- 1999. 12. 31 자정 이후 2000. 1월초 가동시작까지의 시기에 시스템가동테스트 수행
- 시스템의 부하를 줄이기 위해 일정기간동안 공정프로세스 변경
- 다른 사업활동을 줄이고 이로 인한 잉여자원을 2000년 문제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확보
- 모든 원인이 자신이 의무 인지
- 자재의 충분한 재고분 확보

(3) 비상계획 작성:상기 단계 완료후, 비상계획 작성

라. 검증 및 보안

(1) 비상계획 검토

- (가) 검토회의 및 리허설 등을 통하여 비상계획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검증함
- (나) 비상처리 절차 및 처리시간 등이 기대수준에 있는지 시험하기 위한 시험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시험

(2) 비상계획의 보완

- (가) 시험시 나타난 문제점들을 분석·보완
- (나) 새롭게 추가 발견된 문제에 대해서도 앞의 단계를 준용하여 비상계획을 수립함

(3) 비상계획의 승인 : 작성된 비상계획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경영진 등의 승인을 받음

4. 참고사항

- 비상계호기 수립과 관련된 인터넷 홈페이지
 - 산업자원부의 비상계획 지침(<http://www.mocic.go.kr>)
 - 한국전산원의 비상계획 지침(<http://y2000.nca.or.kr>)
- 문의 : 산업자원부 생활전자산업과
정종욱 사무관(Tel:500-2508)

- 기술개발의 실용화 촉진요령에 의한 NT, EM신청시 우선하여 평가
-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우대 보증에 우선적으로 추천지원
-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특별장기원화 대출, 한국산업은행의 중소기업전용 첨단기술 지원 특별펀드에 추진 지원

- 문의 : 중소기업청 기술정책과 어영효사무관
(Tel : 042-472-3286)

중소기업 기술혁신상 제도 안내

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북돋우고 기술혁신 분위기가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 중 기술개발과 품질혁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신제품 및 신모델 개발에 성공한 우수기업을 발굴, 포상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상업체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.

<수상업체에 대한 지원 내용>

- 중소기업청에서 지원 할 내용
 - 기술혁신개발사업, 해외유명규격 획득 지원사업 등에 우대지원
 - 매경신문(중기우수상품지상전), MBN, ARIRANG TV, Home-Shopping(LG, 39)우선 홍보지원
 - 중앙일보에 수상사실과 기술혁신내용 및 제품의 우수성 홍보
 - 해외기술박람회 참가시 우선 추천
 - 퇴직고급인력, 퇴직 수출 유경험자 우선 지원
 -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, 구조개선자금 등에 우대 지원
-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지원 할 내용
 - 기술혁신상 수상업체에 대한 특허우선심사

교육이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제 시행안내

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들의 하도급법 준수의식을 높이고 범위반의 사전 예방을 통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정착을 위하여 교육이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'99. 6. 30 새로 도입한 바 있습니다.

이에 따라 대한건설협회,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, 한국공정거래협회, 한국생산성본부 등 4개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「교육이수업체에 대한 세부운용지침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등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
1. 목적

- 현재 하도급법 상습위반의 방지를 위하여 과거(3년간 또는 1년간)의 범위반전력을 점수로 관리하고 이를 감안하여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치수준을 결정
-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정착을 위해서는 사업자의 법준수의식 제고 및 범위반의 사전예방 강화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범위반 점수를 감점해주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('99. 6. 30,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)
- 인센티브제 대상 : 우수업체 표창, 교육이수, 표

준하도급계약서 사용

- 이에 따라 「교육이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제 세부운용지침」을 마련하여 동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2. 세부 운용지침

■ 교육기관

대한건설협회,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, 한국공정거래협회, 한국생산성본부 등 4개기관

■ 교육대상자

- 하도급관련 업무담당 임원
- 건설 : 공사관리부서, 외주관리부서, 재경담당부서 등의 이사급이상
- 제조 : 구매담당부서, 재경담당부서 등의 이사급 이상

■ 교육시간

3시간이상의 하도급법 관련 특별교육

■ 교육기관별 교육실시 회수 및 시기

- 교육기관별로 연 1회
- 교육기관별 교육 시기

1/4분기	2/4분기	3/4분기	4/4분기
한국공정거래협회	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	한국생산성본부	대한건설협회

- 추후 운영과정에서 교육수요에 따라 실시회수 및 시기 재조정

■ 문의 :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기획과
(Tel : 583-8894/5)

국내인증기관현황 및 해외인증규격안내

1. ISO 9000 인증기관 현황

(* 는 ISO 14000인증도 병행)

인증기관	전화번호
한국품질인증센터(KSA-QA) *	(02)369-8322~3
한국산업기술평가원(ITEP) *	(02)860-1402~3
한국능률협회인증원(KMA-QA) *	(02)714-9314
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(KPC-QA) *	(02)738-9001
한국품질보증원(K-QA)	(0344)443-4084~5
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(KETI)	(0343)55-7654~8
화연인증원(KOTRIC-QA) *	(02)671-1522~3
한국선급(KR)	(042)869-9361
중소기업인증센터(SMICC)	(02)784-3161~4
디엔비이인증원(DNV)	(02)723-7593~4
한국건설산업연구원(CERIK)	(02)3441-0633~5
한국건설기술연구원(NCRI)	(0344)910-0680
LRQA코리아(LRQA)	(02)777-6231
한국건설품질인증원(KICM-QA)	(02)866-9001
HSB-RS코리아(HSB-RS)	(02)757-4992
한국인증원(KCR)	(02)3377-9000
국제경영시스템인증원(ICI)	(02)783-1993
시스템기술인증원(SPEC)	(02)561-9001
한국티유브이프라덕트서비스(TUV-PS)	(02)782-8930
BVQI국제인증(BVQI-Korea)	(02)567-9001
BSI인증원(BSI)	(02)777-4123
한국가스안전공사(KGS)	(032)690-1482
한국산업인증원(KICI)	(02)780-9001

※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(KAB)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임.

2. QS 9000 인증기관 현황

인증기관	전화번호
한국품질인증센터(KSA-QA)	(02)369-8322~3
한국산업기술평가원(ITEP)	(02)860-1402~3
한국능률협회인증원(KMA-QA)	(02)714-9314
화연인증원(KOTRIC-QA)	(02)671-1522
중소기업인증센터(SMICC)	(02)784-3161

3. ISO 9000 연수기관 현황

(*는 ISO 14000인증도 병행)

연수기관	전화번호
한국표준협회(KSA) *	(02)369-8154
한국능률협회(KMA) *	(02)719-8225
한국생산성본부(KPC) *	(02)724-1231~4
한국품질관리기사협회(KQA) *	(0343)448-5871~3
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연수원(SBTI)	(0345)490-1415~7
한국전자재시험연구원(KICM)	(02)830-8234
한국네빌클락(NC)	(02)552-9001

4. 주요 컨설팅 기관

기관명	대표	전화번호
지테크산업기술원	류영석	(02)571-5114
살롬인터내셔널	정인석	(02)563-9014
산틀	조송암	(02)783-2108
한국네빌클락	홍종인	(02)552-9001
텍셈컨설팅	김용군	(02)704-6876
프라임경영컨설팅	권대경	(02)508-8402
한국표준화컨설팅	정갑진	(051)503-8608
한국큐애티아이	문재승	(02)548-9913
탐컨설팅	김정래	(02)567-6688
이스펙스코리아	윤병원	(02)501-4385
큐펙스코리아	이종석	(02)783-1605
한국산업경영컨설팅	고명선	(02)569-5565
한국품질환경연구원	김홍수	(042)630-1127
한표컨설팅	신현상	(02)369-8564
한생컨설팅	오해봉	(02)724-1231

5. 각 국가별 인증규격

유럽공동체(CE Mark), 아일랜드(NSA, RFTL), 영국(BSI, BABT, BASEC, ASTA, BEAB, ATL), 프랑스(UTE, LCIE), 독일(VDE, TUV, GS-Mark, BZT), 벨기에(CEBEC, AIB), 스웨덴(SEMKO), 덴마크(DEMKO), 노르웨이(NEMKO), 핀

란드(FIMKO), 네덜란드(KEMA), 스위스(SEV), 오스트리아(OVE), 이탈리아(IMQ), 포르투갈(IPO, ICP), 스페인(AENOR), 그리스(ELOT), 러시아(GOST-R), 카자흐스탄(GOST-K), 우즈베키스탄(GOST-U), 폴란드(CBJW), 불가리아(DKC, CSM), 유고(FIS), 헝가리(MEEI), 루마니아(STAS), 크로아티아(KONCAR), 에스토니아(ELI), 라트비아(LATAK), 리투아니아(EGSC), 중국(CCIB, CCEE), 한국(KS, 형식승인, EMI), 일본(JIS, T, S-Mark, VCCI), 태국(TISTR, FECU, PTD), 싱가포르(PSB), 캐나다(CSA, IC), 미국(UL, FDA, FCC), 멕시코(NOM), 아르헨티나(IRAM), 호주(QAS, C-TICK), 뉴질랜드(SANZ, RFS), 이스라엘(SII), 이라크(COSQC), 사우디(SASO), 요르단(DOS), 레바논(LIBNOR), 남아공(SABS)

6. 인증획득 정부 지원 절차

